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문제 1】A족발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甲은 2017년 6월 3일부터 2020년 8월 1일의 기간 동안 약 200명의 가맹점사업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에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가맹계약의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갱신공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甲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0일의 기간 동안 1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甲으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이 종전보다 18 ~ 72 % 감소하였다.

한편 甲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현재의 주방시설은 노후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주방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甲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자 乙을 통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직접 인테리어업자를 섭외하는 것 중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자신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甲의 계약갱신요구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35점)

물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분담해야 할 공사비용의 분담대상 및 범위, 그리고 비용부담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2】 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A는 가맹희망자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계약서의 정의 및 그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